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629호 2022년 4월 21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3호) 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4호) 9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5호) 1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6호) 25

■ 고 시

- 지방하천(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9호) 32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0호) 35
- 지방하천(동창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1호) 37
- 예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2호) 40
- 봉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3호) 44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4호) 6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5호) 69

■ 공 고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6호) 71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7호) 72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황남 공영주차장]
(경주시 고시 제2022-70호) 74
-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안강 공영차고지]
(경주시 고시 제2022-71호) 77
-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2-65호) 80
- 봉화 군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2-62호) 87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2년 4월 21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3호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폐교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사항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5.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무상대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2년 4월 21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교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으로 후속 세대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환경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체험, 환경재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교육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 교육의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청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협의회장은 환경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 의회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2.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교 환경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교육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의한다.

2.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학교 환경동아리 및 환경 체험활동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3. 지역특색교육과정인 산림환경교육 지원

4. 학교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학교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환경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

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사업
2. 환경교육 위탁 및 수탁
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등
4.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5.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2년 4월 21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5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방향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3. 지원 및 선정절차
4. 수행 일정
5.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신청서의 접수 등) 교육감은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경우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

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경상북도교육청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 고시로 인정한 재산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교육정보조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 고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고	신고내용	신고일자
	결 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서 수령일
	내 용	통지내용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⑤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22년 4월 21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를 “「지방자치법」 제78조와”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조(「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 서기관”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와 ----- ----- ----- ----- --.</p>
<p>제6조(협의 및 제출) ① ~ ③ (생략)</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조(협의 및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자치법」 제19조----- ----- ----- --.</p>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p>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159조----- ----- ----- ----- ----- -----.</p>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u>예산담당 서기관</u></p> <p>2. (생략)</p> <p>④·⑤ (생략)</p>	<p>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 <u>예산정보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9호

지방하천(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지방하천 낙동강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변경)

○ 낙동강

측점 (No.)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시설물계획	
					당초	변경
79+167	2,434	2,440	465.05	109		
79+267	2,434	2,440	465.11	102		
79+367	2,434	2,440	465.25	81		
79+467	2,434	2,440	465.37	64		
79+567	2,434	2,440	466.27	57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시점
79+667	2,434	2,440	468.67	82		
79+750	2,434	2,440	468.80 (469.09)	72	석포보(가동보)	하상유지공 설치
79+767	2,434	2,440	469.09	71		
79+856	2,434	2,440	469.41	68	제련소1교	제련소1교
79+867	2,434	2,440	469.41	67		
79+967	2,434	2,440	469.41	57		
79+999	2,434	2,440	470.50	63	석포1교	석포1교
80+067	2,434	2,440	471.25	76		
80+167	2,434	2,440	471.74	93		
80+267	2,434	2,440	472.04	116		
80+367	2,434	2,440	472.16	135		
80+467	2,434	2,440	472.29	158		
80+567	2,434	2,440	472.29	126		

측점 (No.)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시설물계획	
					당초	변경
80+667	2,434	2,440	472.35	102		
80+767	1,979	1,980	473.09	77		
80+832	1,979	1,980	474.06	54	영풍교	영풍교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중점
80+863	1,979	1,980	474.53	65	제련소2교	제련소2교
80+867	1,979	1,980	474.70	65		
80+967	1,979	1,980	475.17	74		

※ 변경사유 : “(주)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로 석포
보가 간섭되어 철거 및 재가설 필요하나 석포보의 이수목적이 사라
졌으므로 하상유지공으로 시설물 변경

※ 변경내용 : 시설물계획

※ 변경구간 : No.79+567 ~ No.80+832(영풍교)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봉화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514)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783 도	울산005	NI52-2-14-005
					울산006	NI52-2-14-00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776 묘	울산005	NI52-2-14-005
					울산006	NI52-2-14-00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경주시 건축허가과(☎054-779-648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1호

지방하천(동창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지방하천 동창천에 대해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하폭(변경없음)

마. 하천의 주요지점별 계획홍수위(변경)

○ 동창천

하천명	측 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비 고
				당 초	변 경	현	계획	
동창천	239	23,900	1,965	96.04	96.04	227	-	
	240	24,000	1,965	96.16	96.16	215	-	
	240+21	24,021	1,965	96.19	96.19	210	-	
	240+75	24,075	1,965	96.07	96.25	197	197	신규교량 (새들교)
	241	24,100	1,965	96.42	96.47	192	-	
	241+32	24,132	1,965	97.93	97.93	194	194	숲새들보
	241+75	24,175	1,965	98.00	98.00	191	191	신규교량 (철거)
	242	24,200	1,965	98.00	98.00	187	197	
	242+54	24,254	1,965	98.13	98.13	207	207	
	243	24,300	1,965	98.19	98.19	205	205	
	244	24,400	1,965	98.37	98.37	190	190	
244+53	24,453	1,965	98.42	98.42	187	-		

※ 변경사유 : 기수립시 새들교 지점 위치조정에 따른 계획홍수위 변경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 변경 없음)

※ 변경내용 : 동창천 계획홍수위 및 교량신설 위치 변경

※ 변경구간 : No.240+75 ~ No.241+75지점 계획홍수위 변경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청도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청도군 안전건설과(054-370-2337)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2호

**예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고시하고, 「수도법」 제46조에 따라 협의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비상연계가압장)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예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예천정수장의 수질·수도시설 사고 등에 대응을 위해 예천정수장과 도청신도시 배수지간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 분	시설계획
1. 비상연계가압장	• Q = 10,000m ³ /일, H = 43m
2. 비상연계관로	• D = 400mm, L = 13.84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문·감천·호명·유천·효자·은풍·보문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일최대 급수량(m ³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인·일)
예천읍외 7개 면지역	20,360	13,600	350(읍단위), 286(면단위)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3. 10.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4.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비상연계가압장) 결정,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등 승인조서

가.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예천군 고시 제2022-18호, 2022. 3. 14.)

나. 예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완료(예천군 고시 제2022-35호, 2022. 4. 14.)

※ 관련도서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34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종류	성명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3호

봉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봉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①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

- 명 칭 : 봉현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5-1번지 일원
- 면 적 : 109,867m²

○ 관리기관 : 영주시장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기정	109,867 (100%)	77,661 (70.7%)	1,706 (1.5%)	23,188 (21.1%)	7,312 (6.7%)
변경	109,867 (100%)	77,435 (70.5%)	1,706 (1.5%)	24,446 (22.3%)	6,280 (5.7%)

※ 변경사유 : 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경계와 지적경계간 불부합 구간을 일치하도록
조정함에 따른 면적변경

2. 조성목적 (변경없음)

- 지역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1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1988. 6. 27(최초지정) ~ 1989. 11. 14(조성완료)

4. 추진경위 (변경)

- 1988. 06. 27 : 지정고시

- 1988. 07. 01 : 사업시행자 지정
- 1988. 11. 10 : 실시계획 승인
- 1988. 12. 29 : 착공일
- 1989. 11. 14 : 준공일
- 2004. 11. 25 : 봉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북도 고시 제2004-336호)
- 2021. 12. 24 : 실시계획 (변경)승인 (영주시 고시 제2021-188호)

5. 분양현황 (변경)

- 기정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계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09,867	79,367	-	-	-	79,367	1988 ~ 1989	영주시
산업시설	77,661	77,661	-	-	-	77,661		
지원시설	1,706	1,706	-	-	-	1,706		
공공시설	23,188	-	-	-	-	-		
녹지시설	7,312	-	-	-	-	-		

○ 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09,867	79,141	-	-	-	79,141	1988 ~ 1989	영주 시
산업시설	77,435	77,435	-	-	-	77,435		
지원시설	1,706	1,706	-	-	-	1,706		
공공시설	24,446	-	-	-	-	-		
녹지시설	6,280	-	-	-	-	-		

6. 입주현황 (변경)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m ²)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기 정	26	-	26	77,661	-	77,661
변 경				77,435	-	77,435

7.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 설 명		현 황	확충 계획
교통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고속도로 풍기IC(1km) 이용 ○ 국도 5호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호선 : 마산 ~ 중강진 ○ 지방도 931호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1호선 : 감천 ~ 물야 	-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 풍기역(1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200km, 부산 120km 	-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 지방상수도(풍기정수장)에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중앙을 지나는 산재로에 기매설된 D100mm에서 D80mm관로로 분기하여 인입 	-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내 전력은 영주변전소에서 공급 	-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내 통신은 통신사업자가 공급 	-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는 농공단지에 기매설된 분류식 오수관로를 통해 북동측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영주시환경사업소에서 처리(처리용량 : 45,000m³/일) 	-	

②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소득 증대
- 농공단지 용도별 면적 구획으로 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정보준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변경)

(단위 : m²)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기정	109,867 (100%)	77,661 (70.7%)	1,706 (1.5%)	23,188 (21.1%)	7,312 (6.7%)
변경	109,867 (100%)	77,435 (70.5%)	1,706 (1.5%)	24,446 (22.3%)	6,280 (5.7%)

※ 변경사유 : 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경계와 지적경계간 불부합 구간을 일치하도록 조정함에 따른 면적변경

3.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별표1 참조) (변경)

- 기정
 - 인건, 화섬직 및 저공해제조업 및 지원시설용지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변경

-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제품 및 가죽제품 관련 제조업 제외)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
-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은 지정 저공해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중분류하여 명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주자격 (변경)

○ 기정

- 환경성검토 및 사업성검토에 적합한 업체일 것
-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변경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른 사업성 및 환경성 적합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 녹지구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 인건, 화섬직 관련 제조업체

4.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변경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고용전망 및 근로자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유희노동력(주부, 고령자)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지방병무청과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 유희인력(주부·고령자)활용방안 강구 ○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 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5. 임금소득, 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변경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임금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농번기에는 조업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기능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해외연수 ○ 노·사 관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협조방안강구 ○ 유관기관·단체와의 노사문제대책 협조체제 구축 ○ 종업원에 대한 기술연수 알선 및 교육비 보조 ○ 직종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기능인력 육성 ○ 생산·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희노동력(부녀자, 노령자, 실업생)의 적극적인 채용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농·식품류 우선공급)

6.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변경없음)

(단위:명, 백만원)

입주 업체수	고용예정 인원(명)			연평 균 노 임	연간 생 산 실 적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26	365	300	65	12,000	29,522

나.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변경없음)

인구수(명)			취업가능인력 (추정)
계	농가인구수	비농가인구수	
32,294	20,688	11,606	1,000명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변경)

○ 기정

(단위:㎡, 명)

단지명	조성면적	조성기간	분양면적	입주 업체수	주요업종	고용현황
가흥농공단지	143,208	'87.08.07 ~88.06.30	110,831	10	음식료 외6종	465
장수농공단지	224,429	'92.08.12 ~93.12.31	164,156	25	조립금속외12	318
적서농공단지	312,877	'90.12.31 ~91.11.25	289,802	1	알미늄제조업	565
휴천농공단지	253,122	'94.12.22 ~97.11.14	196,312	1	담배제조업	359

○ 변경

(단위:㎡, 명)

단 지 명	면 적	지정일자	조성 및 분 양	입 주 업체수	주요업종	고용현황
적서농공단지	307,682	1990.09.14	307,682	1	알미늄 제조업	554
장수농공단지	224,430	1990.12.29	224,430	35	섬유 외 6종	338
휴천농공단지	253,112	1993.09.02	253,113	1	담배제조업	303
문수농공단지	149,017	2003.11.11	149,017	15	비금속 외 3종	348
반구전문농공단지	428,271	2010.08.03	확장조성중	20	기타기계 외 2종	862

라. 관내 제조업체 현황 (변경)

○ 지정

(단위:명)

구 분	계	섬유	금속	화공	담배	비금속	식품	기계	전자	목재 출판	기타
업체수	227	108	11	11	1	26	36	5	2	18	9
고용인원	2,903	809	661	33	343	545	323	32	46	55	56

○ 변경

(단위:명)

구분	계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제품	의복	가죽, 가방등	목재	펄프, 종이등	코크스, 연탄등	화학 제품
업체수	238	73	7	1	62	3	2	11	3	2	10
고용인원	4,359	877	43	262	608	13	81	73	27	20	490

구분	고무 및 플라 스틱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금속 가공 제품	전자 부품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타	비금 속
업체수	7	20	6	10	2	2	3	9	2	2	1
고용인원	75	226	667	122	7	6	313	91	321	16	21

**7.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변경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 업종별·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 ○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변경)

가. 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단위 : m²)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기정	109,867 (100%)	77,661 (70.7%)	1,706 (1.5%)	23,188 (21.1%)	7,312 (6.7%)
변경	109,867 (100%)	77,435 (70.5%)	1,706 (1.5%)	24,446 (22.3%)	6,280 (5.7%)

※ 변경사유 : 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경계와 지적경계간 불부합 구간을 일치하도록
조정함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별구역평면도 : 별표2 참조 (변경)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 녹지로 유지·관리

다. 업종별 공장배치계획(현황) : 별표3 참조 (변경)

○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시 적정 배치

○ 기존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

○ 기정

(단위 : m²)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 고
업 종			
인건, 화섬직 및 저공해제조업	26	77,661m ² (23,492평)	

○ 변경

(단위 : m²)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 고
업 종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제품 및 가죽제품 관련 제조업 제외)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	26	77,435m ² (23,424평)	

9.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 생산활동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제공
- 입주기업체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검토 후 결정
- 입주업체간 협의회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나.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m²)

시 설 명	전체면적	
	시설수	면 적
총 계	1	1,706
복 지 회 관	1	1,706

- 공동이용건축물
 - 용 도 : 단지를 위한 편익, 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
 - 개발시기 : 입주기업체 협의회 이용계획에 따라 검토결정
 - 유치계획 :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복지시설, 판매장 등
- 폐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 입주기업 계약 완료 후 결정
 - 처리방식 : 입주기업체의 오·폐수 부하농도에 따라 적정방법 선정
- 폐기물처리
 - 일반폐기물은 영주시에서 수거처리, 특정폐기물은 개별 위탁처리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 전망 (변경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품목별 생산· 수출계획 수립 ○ 생산·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설명회등 개최 ○ 품목별·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운영 자금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융자금 추천 지원 · 3억원 까지 융자금 추천 지원(매출규모별 차등지원) · 이자차액 1년간 3%지원(시,도비) · 매월 1 회 융자금 추천 지원(설,추석달은 제외)

나. 입주업체 사후관리 계획 (변경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농공단지 지역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토지이용효율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진업체 정상화 추진 ○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 ○ 공장용지 유희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
단지방위체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방호체계 수립 ○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

1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영주시 투자유치과(☎054-639-61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1】 입주대상업종 (변경)

(기 정)

'22. 4.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계	26	77,6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 화섬직 및 저공해제조업 및 지원시설용지의 용도에 적합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
인건, 화섬직 및 저공해제조업 및 지원시설용지의 용도에 적합한 용도	26	77,6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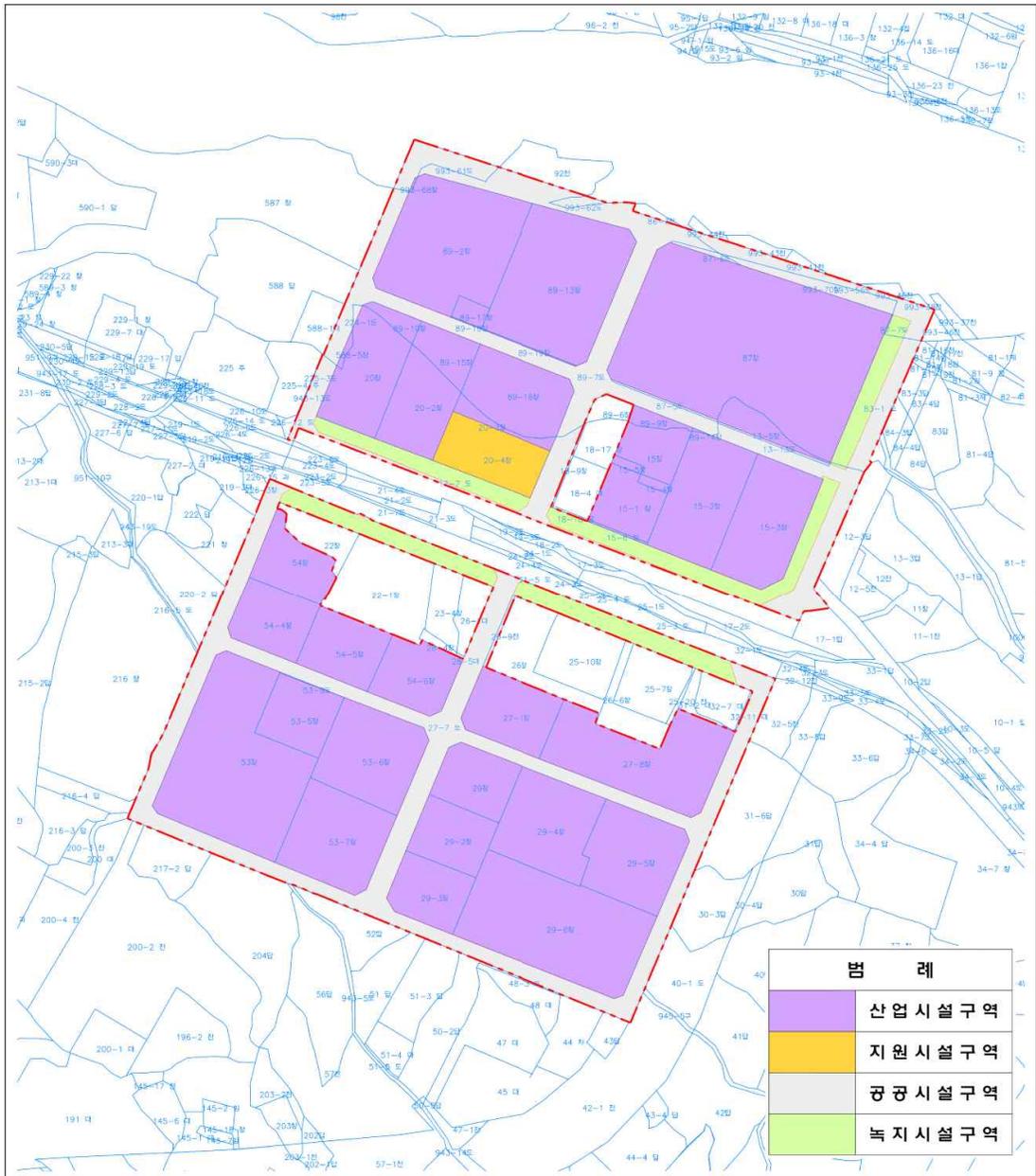
(변 경)

'22. 4. 현재			향 후 계 획		
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 수	면 적 (㎡)	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계	26	77,4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제품 및 가죽제품 관련 제조업 제외)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68.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4	77,4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식료품 제조업(인삼식품 제조업(10795)에 한함),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은 지정 저공해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중분류하여 명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0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제품 및 가죽제품 관련 제조업 제외)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30202)에 한함)					1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에 한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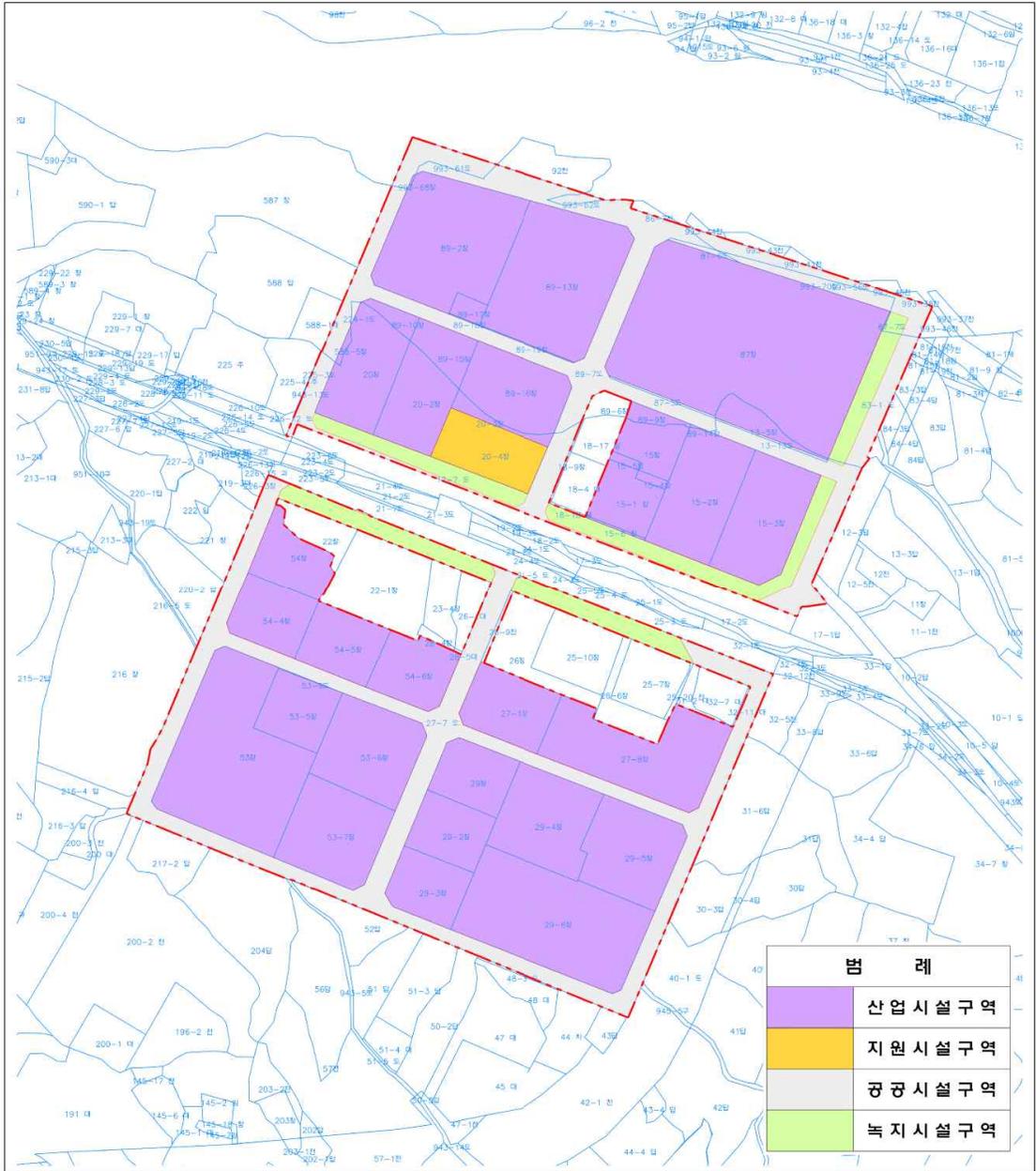
【별표2】 용도별구역평면도 (변경)

봉현농공단지 용도별구역평면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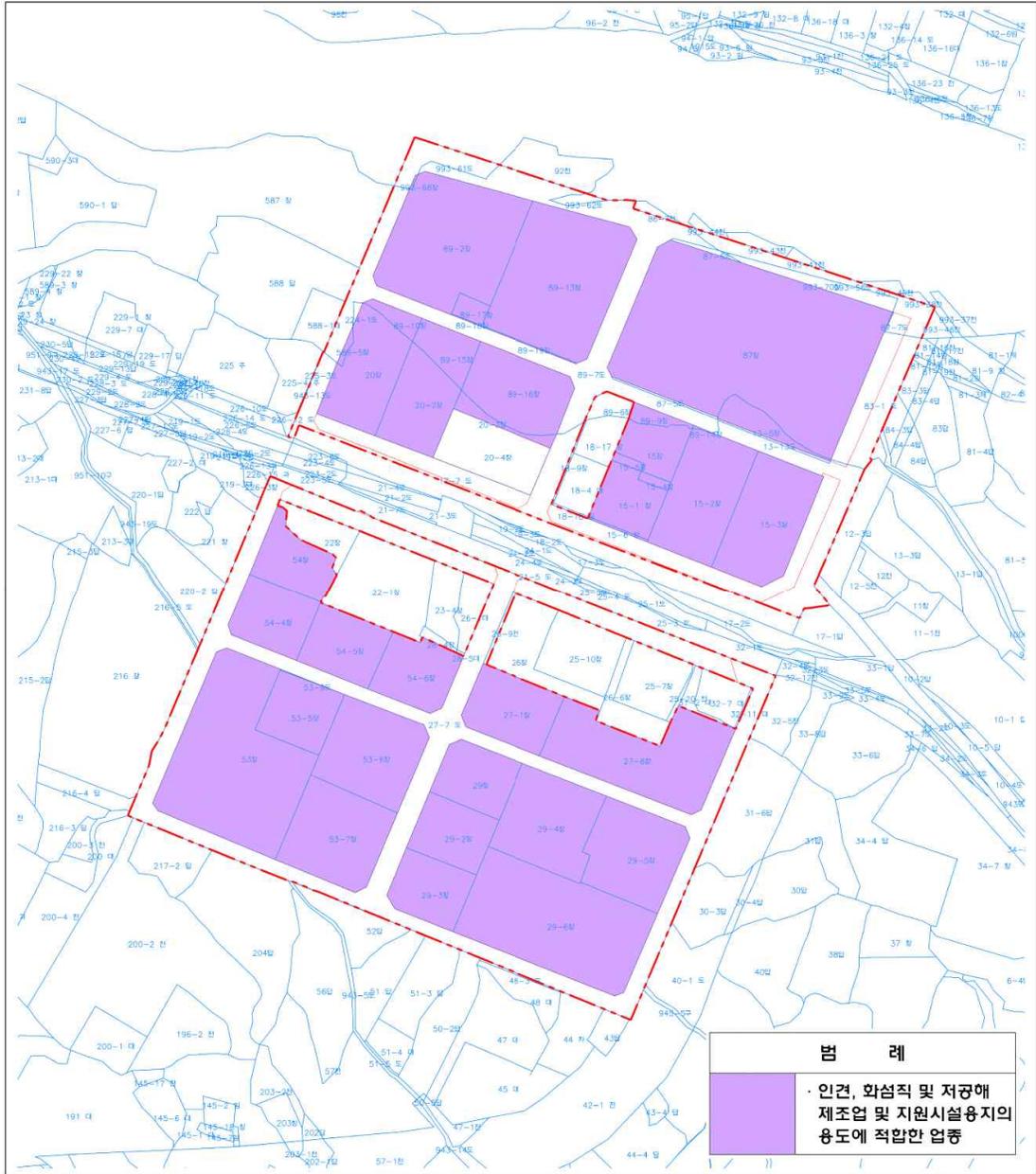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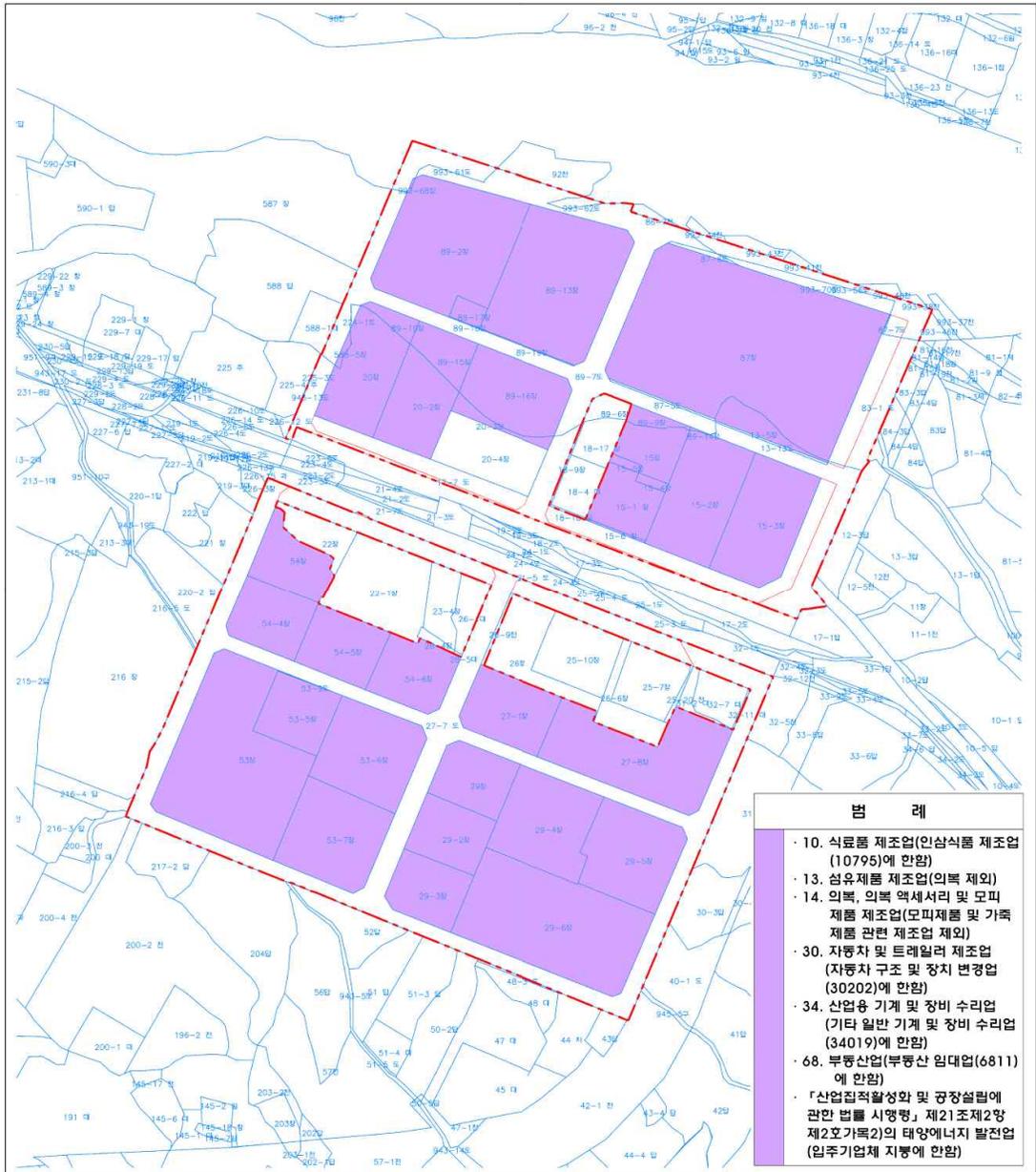
【별표3】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봉현농공단지 업종배치계획도

(기 정)



(변 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4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낙동강)	교량 개체 (2개소)	<비동1교> L=130.2m, B=7.5m (영구 1,062㎡) (일시 4,998㎡) <비동2교> L=119.6m, B=7.5m (영구 1,025㎡) (일시 2,55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일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수 (안전건설 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4.12.31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5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낙동강)	교량 개체 (2개소)	<비동1교> L=130.2m, B=7.5m (영구 1,062㎡) (일시 4,998㎡) <비동2교> L=119.6m, B=7.5m (영구 1,025㎡) (일시 2,55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일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수 (안전건설 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4.12.31까지



경 상 북 도

공 고

【 공 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40 (835-81-02290)	주식회사 세운바이오 (이미희)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4로 16-40	2022.4.19.

끝.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공 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2-8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41 (601-19-91024)	휴미템 (박지성)	경북 상주시 서곡1길 21	2022.4.19.

끝.

2022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2-70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황남 공영주차장]

경주시 사정동 428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경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황남1	황남 공영주차장	경주시 사정동 428번지 일원	-	증) 47,264	47,264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황남1	황남 공영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 A = 47,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계재 생략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423) 및 교통행정과(☎ 054-779-6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고시 제2022-71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안강 공영차고지]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경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 선도로	635	대로 1-1	소로 1-11	일반 도로		경고제443호 (92.12.22)	
변경	중로	1	2	20~ 23	보조간 선도로	635	대로 1-1	소로 1-11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	중로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20m → 20~23m (증 3m) - L = 6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가감속 차로)을 위해 일 부구간 폭원확장

나)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	증) 42,107	42,107	-	

■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정류장 신설 - A = 42,10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제공으로 불법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계재 생략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423) 및 교통행정과(☎ 054-779-6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고시 제2022-65호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문 경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	99,500	-	99,500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도로

① 도로 총괄표

유별	면적(m ²)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5	698	7,600	1	480	4,800	2	128	2,090	2	90	710
중로	1	120	2,000	-	-	-	1	120	2,000	-	-	-
소로	4	578	5,600	1	480	4,800	1	8	90	2	90	710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69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고요1	15	국지 도로	120	고요리 산89-4	고요리 산89-3	일반 도로	-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기정	소로	1	고요1	10	국지 도로	480	고요리 산89-3	고요리 산89-3	일반 도로	-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기정	소로	2	고요1	9	국지 도로	8	고요리 산89-3	고요리 산89-3	일반 도로	-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기정	소로	3	고요1	6	국지 도로	45	고요리 산89-3	고요리 산89-3	일반 도로	-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기정	소로	3	고요 2	6	국지 도로	45	고요리 산89-3	고요리 산89-3	일반 도로	-	2020.05.28. (문경시고시 제2020-79호)	

2) 궤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궤도 (단산 모노레일)	고요리 산89-4	고요리 산79-2	고요리 산84	2,035.0 (400)	33,089.0 (11,700)	2016.03.03 (문경시고시 제2016-9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총 계		15,700	15,600		기정 15,700 변경 15,600	
A	소계	9,600	9,500		기정 9,600 변경 9,500	
	1	5,800	5,800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	5,800	아리랑전시관 및 체험관
	2	3,800	3,700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	기정 3,800	아리랑 숙박시설 구적오차 정정
					변경 3,700	
소계	6,100	6,100		6,100		
B	1	1,100	1,100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	1,100	상업시설용지
	2	5,000	5,000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	5,000	주막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60%		
		용적률	20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A	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의 불허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B	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4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의 불허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최저높이	-	
형태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색채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B	2	용도	허용 용도 변경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의 불허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대상지 내부	대상지로의 주진입로 2개소, 부출입로 1개소로 진출입 가능, 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고시 제2022-62호

봉화 군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1-139호(2021.11.11)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봉화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봉 화 군 수

1. 봉화군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법1	10	국지 도로	572	대로3-2 법전리 977-2	풍정리 산16-4	일반 도로	-	봉화군 고시 제2021-139호 (2021.11.11.)	
변경	소로	1	법1	10~37	국지 도로	572	대로3-2 법전리 977-2	풍정리 산16-4	일반 도로	-	-	B= 10~37m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법1호선	소로 1-법1호선	- 도로 선형 변경 : B=10~37m, L=572m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도로 비탈면 일부 변경

나. 공공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문화재 수리 재료 센터	연구 시설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238-1번지 일원	271,447.5	감) 0.4	271,447.1	봉화군 고시 제2021-139호 (2021.11.11.)	

■ 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 연구시설 면적정정 : A = 271,447.5m ² → 271,447.1m ² 감)0.4m ²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23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
- 명 칭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위한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82,935.1m²
- 규 모
 - 연구시설(문화재수리재료센터) : A=271,447.1m²
 - * 금회 건축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2층 3동(연면적 10,037.33m²)
 - 도로 : 소로1-법1호선 B=10~37m, L=572m(A=11,488.0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화재청장, 봉화군수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11층, 2동 14층,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조서 : 붙임
참조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도시교통과(☎054-679-6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81필지			309,570.6	282,935.1	-	-	-	-	-
1	법전리	977-2	목	1,066.0	436.0	봉화군	-	-	-	-
2	법전리	977-6	대	968.0	249.0	봉화군	-	-	-	-
3	법전리	977-11	도	435.0	23.0	국(국토 교통부)	-	-	-	-
4	법전리	977-17	대	31.0	31.0	봉화군	-	-	-	-
5	법전리	977-18	대	73.0	73.0	봉화군	-	-	-	-
6	법전리	987-1	전	4,043.0	1,448.0	봉화군	-	-	-	-
7	법전리	987-4	전	4,426.0	1,275.0	봉화군	-	-	-	-
8	법전리	987-3	전	3,240.0	248.0	봉화군	-	-	-	-
9	법전리	988	전	526.0	424.0	봉화군	-	-	-	-
10	법전리	989	전	2,347.0	1,593.0	봉화군	-	-	-	-
11	법전리	1202	도	654.0	27.0	국(국토 교통부)	-	-	-	-
12	법전리	산139- 1	임	4,358.0	1,380.0	봉화** 테크 주식 회사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 (가흥동)	임차 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한국 **공사 (대구지사)
								근저 당권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	대원** 협동조합
								지상 권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	대원** 협동조합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3	풍정리	225	전	3,319.0	2,919.0	봉화군	-	-	-	-
14	풍정리	226	전	1,372.0	406.0	봉화군	-	-	-	-
15	풍정리	227	전	2,876.0	1,151.0	봉화군	-	-	-	-
16	풍정리	229	전	1,993.0	1,648.0	봉화군	-	-	-	-
17	풍정리	230-1	답	3,699.9	3,699.9	봉화군	-	-	-	-
18	풍정리	230-2	답	3,005.7	3,005.7	봉화군	-	-	-	-
19	풍정리	231	전	102.0	102.0	봉화군	-	-	-	-
20	풍정리	232-1	전	2,506.0	2,506.0	봉화군	-	-	-	-
21	풍정리	232-2	전	129.0	129.0	봉화군	-	-	-	-
22	풍정리	233	전	1,666.0	1,666.0	봉화군	-	-	-	-
23	풍정리	234	전	3,302.0	3,302.0	봉화군	-	-	-	-
24	풍정리	235-1	답	4,953.7	4,953.7	봉화군	-	-	-	-
25	풍정리	236-1	답	4,704.4	4,704.4	국(문화 재청)	-	-	-	-
26	풍정리	238-1	답	4,171.2	4,171.2	국(문화 재청)	-	-	-	-
27	풍정리	238-2	답	3,553.1	3,553.1	국(문화 재청)	-	-	-	-
28	풍정리	239	전	212.0	212.0	국(문화 재청)	-	-	-	-
29	풍정리	240-1	답	2,393.8	2,393.8	국(문화 재청)	-	-	-	-
30	풍정리	240-2	답	2,203.1	2,203.1	국(문화 재청)	-	-	-	-
31	풍정리	241	전	6,417.0	6,417.0	국(문화 재청)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32	풍정리	242-1	전	5,808.0	5,808.0	국(문화 재청)	-	-	-	-
33	풍정리	242-2	답	936.0	936.0	국(문화 재청)	-	-	-	-
34	풍정리	243-1	답	5,728.1	5,728.1	국(문화 재청)	-	-	-	-
35	풍정리	244	전	2,668.0	2,668.0	국(문화 재청)	-	-	-	-
36	풍정리	244-2	전	267.0	267.0	국(문화 재청)	-	-	-	-
37	풍정리	245-1	답	2,219.9	2,219.9	국(문화 재청)	-	-	-	-
38	풍정리	245-2	답	2,529.5	2,529.5	국(문화 재청)	-	-	-	-
39	풍정리	245-3	답	5,267.2	5,267.2	금*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	-	-	-	-
40	풍정리	246-1	구	2,219.1	2,219.1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41	풍정리	246-3	구	6,616.5	4,642.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42	풍정리	246-4	도	2,642.9	2,642.9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43	풍정리	246-5	도	3,976.6	3,976.6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44	풍정리	247	전	4,703.0	4,703.0	국	-	-	-	-
45	풍정리	247-1	대	788.0	788.0	국(문화 재청)	-	-	-	-
46	풍정리	247-3	전	602.0	602.0	이*성	캐나다국 온타리오 주 돈힐 뉴해분스 **번지	가처 분	경상 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55-**	**인류를 위한 **교회
47	풍정리	248	전	5,468.0	5,468.0	국(문화 재청)	-	-	-	-
48	풍정리	249	전	5,183.0	5,183.0	국(문화 재청)	-	-	-	-
49	풍정리	250	전	681.0	681.0	국(문화 재청)	-	-	-	-
50	풍정리	251-1	답	1,441.5	1,441.5	금*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	근저 당권	경상 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농업협 동조합
51	풍정리	251-2	답	1,474.9	1,474.9	국(문화 재청)	-	-	-	-
52	풍정리	252-1	답	1,653.2	1,653.2	국(문화 재청)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53	풍정리	252-2	답	5,217.0	5,217.0	국(문화 재청)	-	-	-	-
54	풍정리	253-1	답	5,391.4	5,391.4	금*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	근저 당권	경상 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76	춘양농업 협동조합
55	풍정리	253-2	답	778.9	778.9	국(문화 재청)	-	-	-	-
56	풍정리	254-1	답	1,514.0	1,514.0	국(문화 재청)	-	-	-	-
57	풍정리	254-2	답	2,490.0	2,490.0	국(문화 재청)	-	-	-	-
58	풍정리	255	답	85.0	85.0	국(문화 재청)	-	-	-	-
59	풍정리	256	전	875.0	875.0	국(문화 재청)	-	-	-	-
60	풍정리	691	전	2,178.0	2,178.0	국(문화 재청)	-	-	-	-
61	풍정리	692	전	7,418.0	7,418.0	국(문화 재청)	-	-	-	-
62	풍정리	693	전	1,045.0	1,045.0	국(문화 재청)	-	-	-	-
63	풍정리	694	전	770.0	770.0	국(문화 재청)	-	-	-	-
64	풍정리	695	전	691.0	691.0	국(문화 재청)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65	풍정리	696	대	569.0	569.0	국(문화 재청)	-	-	-	-
66	풍정리	697-1	전	3,736.0	3,736.0	국(문화 재청)	-	-	-	-
67	풍정리	1139-1	구	1,173.0	970.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68	풍정리	1139-3	구	934.0	934.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69	풍정리	1139-5	구	414.0	414.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70	풍정리	1156	구	615.0	50.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71	풍정리	1158-2	구	37.0	37.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72	풍정리	1158-3	구	153.0	153.0	국(농림 축산식 품부)	-	-	-	-
73	풍정리	산15-1	임	3,947.0	3,947.0	국(문화 재청)	-	-	-	-
74	풍정리	산15-2	임	4,237.0	4,237.0	국(문화 재청)	-	-	-	-
75	풍정리	산15-3	임	2,133.0	2,133.0	국(문화 재청)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76	풍정리	산16-3	임	45,026.0	45,026.0	이*관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 트1동 ***호	-	-	-
77	풍정리	산16-4	임	4,347.0	2,219.0	이*관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 트1동 ***호	-	-	-
78	풍정리	산17-2	임	1,103.0	736.0	봉화군	-	-	-	-
79	풍정리	산18-2	임	1,983.0	1,983.0	국(문화 재청)	-	-	-	-
80	풍정리	산18-3	임	4,165.0	4,165.0	국(문화 재청)	-	-	-	-
81	풍정리	산18-5	임	68,926.0	65,924.0	이*성	캐나다국 온타리오 주 돈힐 뉴해븐스 **번지	가처 분	경상 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55-**	**인류를 위한 **교회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법전면 풍정리	산18-5	임	주목 나무	-	508	주	이*성	캐나다국 온타리오 주 돈힐 뉴해븐스 **번지	-	-	-
				소나무	평균수고(m):13/07-17 평균경급(cm):28/10-50	240	본					
				낙엽 송	평균수고(m):19/07-27 평균경급(cm):22/08-54	2,377	본					
				아까 시	평균수고(m):08/05-23 평균경급(cm):14/06-46	164	본					
				굴참 나무	평균수고(m):14/05-22 평균경급(cm):22/06-48	17	본					
				상수 리	평균수고(m):13/06-24 평균경급(cm):24/08-44	15	본					
				리기 다	평균수고(m):12/08-14 평균경급(cm):22/12-28	16	본					
				신갈 나무	평균수고(m):09/06-13 평균경급(cm):14/06-22	950	본					
				기타 활엽 수	평균수고(m):08/05-14 평균경급(cm):12/06-38	959	본					
				잣나 무	평균수고(m):10/05-14 평균경급(cm):16/06-28	2,979	본					
전나 무	평균수고(m):10/09-14 평균경급(cm):16/24-26	6	본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세상